

인공지능연구원/규정

2020년 4월 [규정개정](#)에 따라 신설된 [인공지능연구원](#) 규정

□

목차

- [1 제 1 장 총 칙](#)
 - [1.1 제1조 \(명칭\)](#)
 - [1.2 제2조 \(설립목적\)](#)
 - [1.3 제3조 \(사업\)](#)
 - [1.4 제4조 \(위치\)](#)
- [2 제 2 장 조 직](#)
 - [2.1 제5조 \(구성\)](#)
 - [2.2 제6조 \(원장, 부원장\)](#)
 - [2.3 제7조 \(연구센터\)](#)
 - [2.4 제8조 \(고문\)](#)
- [3 제 3 장 운영위원회](#)
 - [3.1 제9조 \(구성\)](#)
 - [3.2 제10조 \(심의사항\)](#)
 - [3.3 제11조 \(회의\)](#)
 - [3.4 제12조 \(자문위원회\)](#)
- [4 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](#)
 - [4.1 제13조 \(연구교원\)](#)
 - [4.2 제14조 \(직원\)](#)
- [5 제 5 장 재 정](#)
 - [5.1 제15조 \(재정\)](#)
 - [5.2 제16조 \(재정의 관리\)](#)
- [6 제 6 장 감 사](#)
 - [6.1 제17조 \(감사\)](#)
 - [6.2 제18조 \(자체감사\)](#)
- [7 제 7 장 폐 원](#)
 - [7.1 제19조 \(해산\)](#)
- [8 제 8 장 보 칙](#)
 - [8.1 제20조 \(운영세칙\)](#)
- [9 부 칙](#)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연구원은 한양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‘인공지능연구원’ (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HY_AIR)이라 한다.

제2조 (설립목적)

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 및 그 응용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인공지능기반의 다양한 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인공지능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인공지능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한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
2.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
3.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
4. 연구발표, 세미나 개최 및 이에 따르는 간행물 발간
5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반 융합연구를 통한 연구인력 양성
6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
7. 기타 본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4조 (위치)

인공지능연구원은 본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 (구성)

인공지능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원장
2. 부원장
3. 연구센터
4. 고문
5. 운영위원회
6. 연구교원
7. 직원
8. 감사

제6조 (원장, 부원장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을 대표하며 인공지능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인공지능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연구센터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 내에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센터의 존속 여부는 3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, 매년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 (고문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의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② 고문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9조 (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은 원장, 부원장, 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심의사항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공지능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

3.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 (회의)

-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자문위원회)

- ①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회는 약간 명의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

제13조 (연구교원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 (직원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5 장 재정

제15조 (재정)

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비

2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3.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
4. 기타 수입

제16조 (재정의 관리)

-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원장이 집행한다.
- ② 인공지능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,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의 모든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감 사

제17조 (감사)

감사는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8조 (자체감사)

- ①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1.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예결산
 2.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 3.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의 당해 연도 예결산
 4.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7 장 폐 원

제19조 (해산)

인공지능연구원이 폐원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8 장 보 칙

제20조 (운영세칙)

기타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